#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962 발의연월일: 2021. 12. 17.

발 의 자:노웅래・김병기・서영석

송옥주 · 신정훈 · 양기대

양이원영 · 윤준병 · 이해식

최인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정부는 석탄발전소 밀집지역 등 대기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위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년부터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시행하고 있음.

한편, 대기오염총량제의 핵심 내용인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배출권 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는 달리 차입, 상쇄, 추가할당 등과 같은 유연성 기제가 부족해 사업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및 지역 예비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유근거,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시적 근 거가 없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 가.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의 증가, 시설 신·증설 등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이 증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배출허용총 량을 추가로 할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나.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의 폐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은 경우 등에 있어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취소한 배출허용총량은 그 양만큼 예비분이 늘어난 것 으로 보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 다.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추가할당,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등을 위해 예비분을 보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 라. 제17조의4에 따라 할당이 취소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이의신청 조항에 해당 내용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 마. 총량관리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부족한 배출허용총량은 다른 이행연도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 마. 총량관리사업자가 외부 감축활동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상쇄 배출허용총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양만큼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 바. 법률 개정에 따라 할당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9조제1항 신설).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할당)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을 추가로 할당(이하 "추가할당"이라 한다)할수 있다.
  -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총량관리사업장 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우
  -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당기간 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추가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이하"할당취소"라 한

- 다)할 수 있다.
-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 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취소된 배출허용총량은 그 양만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예비분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 ⑤ 할당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의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 1. 제17조의2에 따른 추가할당
  - 2.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 3. 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1.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또는 추가할당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2.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 3.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취소 결과: 할당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제20조제4항을 삭제한다.
-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할당기간의 어느

- 한 해를 말한다)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하거나 차입한 배출허용총량은 각각 그해당 이행연도에 제17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 ④ 이월 및 차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의3(상쇄)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사업장 안에서의 감축활동 이외의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동"이라 한다)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허용총량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전환을 신청한 경우 전환되는 배출허용총량(이하 "상쇄 배출허용총량"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 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상쇄 배출 허용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쇄 배출허용총량만큼 총량관리사업 자가 그 해의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본다.
  - ⑤ 외부 감축실적의 전환 신청, 통보,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할당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할당취소 관련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규로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는 사업 장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7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추가할
	당)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총
	량관리사업자에게 배출허용총량
	을 추가로 할당(이하 "추가할당"
	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
	용총량(총량관리사업장 부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증가된 경
	<u> </u>
	2.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은 기간(이하 "할
	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이나 증설로 총
	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경우</u>
	② 추가할당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렁으로 정한다.
<u> </u>	제17조의3(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취
	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 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 할당한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이하 "할 당취소"라 한다)할 수 있다.
- 1. 기본계획 변경으로 지역배출허용총량이 감소된 경우
- 2. 총량관리사업자가 사업장을 폐 쇄한 경우
- 3. 제15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에 미 달하게 되는 경우
-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총량관리 사업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 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 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총량관리사업자 의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취소된 배출허용 총량은 그 양만큼 제17조의4에 따

<신 설>

제18조(이의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총량관리사업자는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날 또는 배출량산정 결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이내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

른 예비분이 늘어난 것으로 본다.

⑤ 할당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
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배출허용총량 예비분)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 1. 제17조의2에 따른 추가할당
- 2.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 3. 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이의신청) ① 총량관리사업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 1. 제17조제1항 및 제17조의2제1
     항에 따라 할당 또는 추가할당
     받은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
     량을 할당 또는 추가할당 받은

신청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③ (생 략)

④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받은 연 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 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 배출허용 총량에 더할 수 있다.

<u>⑤</u> (생 략) <신 설> 날부터 30일 이내

- 2.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배출량 산정 결과: 배출량 산정 결과 과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 3.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할당취소 결과: 할당취소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 ①~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배출허용총량의 이월 및 차입) ① 총량관리사업자는 보유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제20조에 따라 이전한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 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

있다. ② 호 가기 키 시 키 나 된 티 키 키 기

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 ② 총량관리사업자는 할당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할당기간의 어느 한 해를 말한다)에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도에 차입할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월하 거나 차입한 배출허용총량은 각각 그 해당 이행연도에 제17조에 따라 할당된 것으로 본다.
- ④ 이월 및 차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20조의3(상쇄) ① 총량관리사업자 는 사업장 안에서의 감축활동 이 외의 감축활동(이하 "외부 감축활 동"이라 한다)으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저감한 경우 환경부장 관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 허용총량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 량관리사업자가 배출허용총량 전

<신 설>

제49조(과태료) <신 설>

① ~ ③ (생 략)

환을 신청한 경우 전환되는 배출 허용총량(이하 "상쇄 배출허용총 량"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고 그 결 과를 총량관리사업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총량관리사업자의 상쇄 배출허용총량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 쇄 배출허용총량의 산정을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 관에 자문하게 할 수 있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상 쇄 배출허용총량만큼 총량관리사 업자가 그 해의 배출량을 줄인 것 으로 본다.
- ⑤ 외부 감축실적의 전환 신청, 통보, 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9조(과태료) ① 제17조의3제2항 에 따라 할당취소 사유를 보고하 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

④ 제1항부터 <u>제3항</u>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부과·징수한다.

까지와 같음)
<u> </u>